



시보는 공문시행에 대체하는 효력을 갖습니다.

www.namwon.go.kr

제49호 2021. 12. 3(금)

선 람	기관의 장

공 고

- 남원시 공고 제2021-2321호 남원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1
- 남원시 공고 제2021-2334호 도로 지정 공고 ----- 18
- 남원시 공고 제2021-2369호 도로 지정 변경 공고 ----- 19

회 람										
--------	--	--	--	--	--	--	--	--	--	--

남원시 공고 제2021-2321호

『남원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29일

남 원 시 장

남원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기업 노동자의 관내 전입 유도를 위한 노동자 전입정착금의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고 노동자 전입정착 지원과 국내외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공정하고 실효성 있게 운영 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전입의 정의 및 동반거주자 지원 조건의 명확화(안 제6조)
- 나. 노동자 전입정착금 지원 신청서와 국내외 전시·박람회 지원 신청서, 정산서 서식 변경 및 노동자 전입정착금 변경 지원 신청서 추가(안 제8조, 제10조 별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추가
- 다. 노동자 전입정착금과 국내외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의 허위신청 및 지급 자격요건 미충족 신청인에 대한 지급 취소 및 환수 근거 마련(안 제9조, 제10조)

3. 입법예고기간 : 2021. 11. 29. ~ 2021. 12. 19. (20일간)

4.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은 2021년 12월 19일까지 의견을 남원시장(참조:기업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 55738 /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청 기업지원과

다.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전화(063-620-6645), 팩스(063-620-6773), 이메일 (april795@korea.kr) 및 직접방문 등

5.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기업지원과(☎063-620-66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붙임 : 남원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1부.

의견제출서

1. 의견제출 목록		남원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제출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1년 월 일

의견서 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 화 :

남원시장 귀하

비 고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남원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21. 12. .
제 출 자 :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 기업지원과장

1. 개정이유

기업 노동자의 관내 전입 유도를 위한 노동자 전입정착금의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고 노동자 전입정착 지원과 국내외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공정하고 실효성 있게 운영 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전입의 정의 및 동반거주자 지원 조건의 명확화(안 제6조)
- 나. 노동자 전입정착금 지원 신청서와 국내외 전시·박람회 지원 신청서, 정산서 서식 변경 및 노동자 전입정착금 변경 지원 신청서 추가(안 제8조, 제10조 별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추가
- 다. 노동자 전입정착금과 국내외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의 허위신청 및 지급 자격요건 미충족 신청인에 대한 지급 취소 및 환수 근거 마련(안 제9조, 제10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남원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지원 조례」
- 나. 그 밖의 사항
 - 1) 입법예고
 - 기 간 : 2021. 11. . ~ 2021. 12. . (20일간)
 - 결 과 :
 - 2) 비용추계서 :
 - 3) 규제영향분석서 : 비 추계대상

남원시 규칙 제 호

남원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남원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기업”을 “기업(제조업체)”으로, “내국인”을 “노동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종전의 제2호) 중 “세대 또는 가구”를 “세대”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다른 시·군·구에서 시 관내로 「주민등록법」상 거주지를 이전한 사람이
나, 국적을 새로 취득하여 시 관내로 주민등록(이하 “전입”이라 한다)한 내국
인

5. 2명 이상 세대의 경우, 노동자의 주민등록상 전입한 세대 구성원(이하 “동반
거주자”라 한다.)

제7조 중 “매월 1명 전입할 경우 5만원, 2명 이상 전입할 경우 10만원”을 “1명 전
입한 경우 월 5만원, 2명 이상 전입한 경우 월 10만원”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전입정착금 신청)”을 “(전입정착금 신청·변경)”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 중 “별지 제7호 서식”을 “별
지 제7호서식”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전입정착금을 지급받는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변경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동반거주자가 전입 또는 전출한 경우
2. 노동자가 관외 전출 없이 관내 기업(제조업체)으로 이직한 경우. 다만, 이직 후 노동기간이 3개월 이상 경과하여야 하며, 지원기간(2년)에서 기지급기간을 제외한 기간 동안 지원한다.

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제10조 및 제11조로 하고,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전입정착금 중지·환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급자격요건 미충족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월분부터 전부 또는 일부 지급이 중지되며, 지급자격요건 미충족 대상자에게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할 수 있다. 환수금을 내야 할 사람이 내지 않으면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

1. 신청인이 퇴사한 경우(전부 지급 중지)
2. 신청인이 전출한 경우(전부 지급 중지)
3. 동반거주자가 전출한 경우(동반거주자 지급분 지급 중지)

② 노동자 전입정착금 신청과 관련하여 거짓 또는 부정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급금을 환수할 수 있다. 환수금을 내야 할 사람이 내지 않으면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

제10조(종전의 제9조) 제2항제1호 중 “관계없이”을 “관계 없이”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별지 제9호 서식”을 “별지 제10호서식”으로, “별지 제10호 서식”을

“별지 제11호서식”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시장은 신청기업이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신청과 관련하여 거짓 또는 부정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 환수금을 내야 할 사람이 내지 않으면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

제11조(종전의 제10조)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노동자 전입정착금 지원조건) ① 시장은 조례 제9조의2에 따른 노동자 전입정착금(이하 “전입정착금”이라 한다)의 지원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근무하는 <u>기업</u>에서 별지 제8호 서식의 추천서를 받은 <u>내국인</u> <신 설></p> <p>2. 주거형태는 1명 이상의 <u>세대</u> 또는 <u>가구</u>로 구성</p> <p>3. (생 략)</p> <p>4. 그 밖에 시장이 전입 노동자로 인정하는 경우 <신 설></p> <p>제7조(전입정착금 지원액) 전입정</p>	<p>제6조(노동자 전입정착금 지원조건) ① ----- ----- ----- -----.</p> <p>1. ----- <u>기업(제조업체)</u>----- <u>노동자</u></p> <p>2. <u>다른 시·군·구에서 시 관내로 「주민등록법」상 거주지를 이전한 사람이나 국적을 새로 취득하여 시 관내로 주민등록(이하 “전입”이라 한다)한 내국인</u></p> <p>3. ----- <u>세대</u> -----</p> <p>4.(현행 제3호와 같음)</p> <p>4. <삭 제></p> <p>5. 2명 이상 세대의 경우, 노동자의 주민등록상 전입한 세대구성원(이하 “동반거주자”라 한다.)</p> <p>제7조(전입정착금 지원액) -----</p>

현 행	개 정 안
<p>착금의 지원액은 <u>매월 1명 전입할 경우 5만원, 2명 이상 전입할 경우 10만원</u>으로 한다.</p>	<p>----- <u>1명 전입한 경우 월 5만원, 2명 이상 전입한 경우 월 10만원</u>-----.</p>
<p>제8조(<u>전입정착금 신청</u>) 전입정착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u>별지 제7호 서식</u>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8조(<u>전입정착금 신청·변경</u>) ① ----- <u>별지 제7호서식</u>-----.</p>
<p><u><신 설></u></p>	<p>② <u>전입정착금을 지급받는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변경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동반거주자가 전입 또는 진출한 경우</u> 2. <u>노동자가 관외 진출 없이 관내 기업(제조업체)으로 이직한 경우. 다만, 이직 후 노동기간이 3개월 이상 경과하여야 하며, 지원기간(2년)에서 지급기간을 제외한 기간 동안 지원한다.</u>
<p><u><신 설></u></p>	<p>제9조(<u>전입정착금 중지·환수</u>) ① <u>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급자격요건 미충족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u></p>

현 행	개 정 안
<p>제9조(국내외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 ① (생략)</p> <p>② 제1항의 지원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상시노동자가 5명 이상이고,</p>	<p><u>해당월분부터 전부 또는 일부 지급이 중지되며, 지급자격요건 미충족 대상자에게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할 수 있다. 환수금을 내야 할 사람이 내지 않으면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u></p> <p><u>1. 신청인이 퇴사한 경우(전부 지급 중지)</u></p> <p><u>2. 신청인이 전출한 경우(전부 지급 중지)</u></p> <p><u>3. 동반거주자가 전출한 경우(동반거주자 지급분 지급 중지)</u></p> <p><u>② 노동자 전입정착금 신청과 관련하여 거짓 또는 부정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급금을 환수할 수 있다. 환수금을 내야 할 사람이 내지 않으면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u></p> <p>제10조(국내외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 ① (현행과 같음)</p> <p>② ----- -----.</p> <p>1. -----</p>

현 행	개 정 안
<p>신청일 현재 관내에 소재하며,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기업, 다만 창업일부터 5년 이내의 중소기업은 상시 노동자수와 <u>관계없이</u> 지원</p> <p>2. (생략)</p> <p>3.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u>별지 제9호 서식</u>에 따라 전시·박람회 참가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 지원대상업체로 선정되어 보조금을 지원 받은 경우에는 전시회 참가 후 <u>별지 제10호 서식</u>에 따라 전시·박람회 참가 보조금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p> <p><u><신 설></u></p> <p><u>제10조(운용규정)</u> 이 규칙에 규정되지 <u>아니한</u>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p>	<p>-----</p> <p>-----</p> <p>-----</p> <p>-----</p> <p><u>관계 없이</u>-----</p> <p>2. (현행과 같음)</p> <p>3. ----- <u>별지 제10호서식</u>-----</p> <p>-----</p> <p>-----</p> <p>-----</p> <p>-----</p> <p>----- <u>별지 제11호서식</u>-----</p> <p>-----</p> <p>-----</p> <p><u>③ 시장은 신청기업이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신청과 관련하여 거짓 또는 부정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 환수금을 내야 할 사람이 내지 않으면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u></p> <p><u>제11조(운용규정)</u> -----</p> <p>---- <u>않은</u> -----</p> <p>-----.</p>

■ 남원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앞면)

노동자 전입정착금 지원신청서 (제8조제1항 관련)

지원 대상자	성 명		성 별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전 화 번 호				전 입 일 자	. . .	
	기 업 명				주소지이전	→ 남원	
	입사연월일				근 무 부 서		
	금 용 기 관		계좌번호			예금주	
동반거주자 전입 현황	관 계	성 명	성 별	주민등록번호		전입일자	
				-			
				-			
				-			

「남원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노동자 전입정착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남 원 시 장 귀하

제출서류	1.소속 기업의 추천서 1부 2.재직증명서 1부 3.사업자등록증 1부(공장등록업체 제외) 4.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매월초 제출, 재직 여부 확인)
담당자 확인서류	1. 주민등록등·초본

※ 아래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동의여부” 에 √ 표 하세요.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동의여부
신청인과 동반거주자의 주민등록등·초본 (매월초 전출 여부 확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 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 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음**)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노동자 전입정착금 허위신청 및 자격요건 미충족 신청자에 대한 지급 취소 안내

「남원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신청한 노동자 전입정착금 지급과 관련하여 거짓 또는 부정사례가 발생하거나 지급자격요건 미충족 대상자에게 지급된 경우에는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환수할 수 있습니다.

본 사항을 신청인이 확인하는 것에 대해 아래의 날인으로 같음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남원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뒷면)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

※ 동의하는 경우 □ 안에 √ 하시기 바라며, 한 항목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내역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남원시 인구증가시책(기업노동자 전입정착금) 지원을 위해 활용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인구증가시책 지원관리를 위해 필요한 기간(5년)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업 종료 시부터 3년 보존 후 파기됩니다.
수집하는 기본 개인정보 항목	성명, 성별, 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및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위 항목 동의 거부 시 남원시 인구증가시책 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하는데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 고유식별정보 수집 · 이용 내역

고유식별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남원시 인구증가시책(기업노동자 전입정착금) 지원을 위해 활용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인구증가시책 지원관리를 위해 필요한 기간(5년) ※수집한 고유식별정보는 사업 종료 시부터 3년 보존 후 파기됩니다.
수집하는 고유 식별정보 항목	주민등록번호, 은행계좌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귀하는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위 항목 동의 거부 시 남원시 인구증가시책 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만 14세 미만 아동은 반드시 법적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법정대리인 동의서] 본인은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으로 개인정보 제공, 고유식별정보 처리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 담당자가 전자적으로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법정대리인 성명	(인/서명)
법정대리인 연락처	
법정대리인과의 관계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남원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앞면)

노동자 전입정착금 변경 지원신청서 (제8조제2항 관련)

지원 대상자	성명				성별	
	주소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변경사항	<input type="checkbox"/> 동반거주자 전입	관계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전입일자
					-	
	<input type="checkbox"/> 동반거주자 전출	관계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전출일자
					-	
	<input type="checkbox"/> 신청인 이직	기업명				
		근무부서			입사연월일	
<input type="checkbox"/> 신청인 전출						

「남원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노동자 전입정착금 변경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원시장 귀하

이직자 제출서류	1.소속 기업의 추천서 1부 2.재직증명서 1부 3.사업지등록증 1부(공장등록업체 제외) 4.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매월초 제출, 재직 여부 확인)
담당자 확인서류	1. 주민등록등·초본

※ 아래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동의여부”에 √ 표 하세요.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동의여부
신청인과 동반거주자의 주민등록등·초본 (매월초 전출 여부 확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 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 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음)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노동자 전입정착금 허위신청 및 자격요건 미충족 신청자에 대한 지급 취소 안내

「남원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신청한 노동자 전입정착금 지급과 관련하여 거짓 또는 부정사례가 발생하거나 지급자격요건 미충족 대상자에게 지급된 경우에는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환수할 수 있습니다.

본 사항을 신청인이 확인하는 것에 대해 아래의 날인으로 같음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남원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뒷면)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

※ 동의하는 경우 □ 안에 √ 하시기 바라며, 한 항목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내역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남원시 인구증가시책(기업노동자 전입정착금) 지원을 위해 활용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인구증가시책 지원관리를 위해 필요한 기간(5년)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업 종료 시부터 3년 보존 후 파기됩니다.
수집하는 기본 개인정보 항목	성명, 성별, 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및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위 항목 동의 거부 시 남원시 인구증가시책 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하는데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 고유식별정보 수집 · 이용 내역

고유식별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남원시 인구증가시책(기업노동자 전입정착금) 지원을 위해 활용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인구증가시책 지원관리를 위해 필요한 기간(5년) ※수집한 고유식별정보는 사업 종료 시부터 3년 보존 후 파기됩니다.
수집하는 고유 식별정보 항목	주민등록번호, 은행계좌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귀하는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위 항목 동의 거부 시 남원시 인구증가시책 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만 14세 미만 아동은 반드시 법적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법정대리인 동의서] 본인은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으로 개인정보 제공, 고유식별정보 처리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 담당자가 전자적으로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법정대리인 성명	(인/서명)
법정대리인 연락처	
법정대리인과의 관계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남원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국내·외 개별박람회 참가 지원 사업 정산서(제10조 관련)

신청기업 현황	기업명				대표자				
	주소								
	연락처				이메일				
박람회 참가개요	행사명								
	행사기간				행사장소				
	전시제품				사업량		부스		
사업비 집행내역 (단위 : 천원)	계 획			집 행 액			잔 액		
	계	보조금	자부담	계	보조금	자부담	계	보조금	자부담
참가실적	상담건수		건		상담금액		백만원		
	계약건수		건		계약금액		백만원		
	방문자수		명		바이어수		명		
<p>당사는 위와 같이 국내·외 개별박람회 참가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기업명 : _____</p> <p style="text-align: center;">대표자 : _____ (인)</p> <p>남원시장 귀하</p>									
<p>※ 첨부서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보조금 정산서 1부 2. 전시(박람회) 참가 증빙 사진 2매 3. 박람회 부스임차료 지급관련 증명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금계산서 및 계좌입금내역서 각 1부 4. 납품서(박람회 측) 및 결과보고서(보조사업자 측) 									

◎ 남원시 공고 제 2021 -2334호

도로지정공고

건축법 제2조제11호 및 같은 법 제45조에 따라 건축허가(신고)시 그 위치를 지정한 도로를 다음과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30일

남 원 시 장

○ 도로지정 공고내역

지정 번호	대 지 위 치	건축주 성 명	허가(협의) 및 신고번호	도로 길이 (m)	도로 너비 (m)	도로 면적 (㎡)	이해관계인		
							지 번	편입면적 (㎡)	토지소유자
2021-4 1	남원시 운봉읍 권포리 1233-1	정*균	2021-건축과- 신축허가-128	215	3.2~ 3.6	737	권포리 1313	676	국(농림부)
							권포리 1314	61	국(농림부)

◎ 남원시 공고 제 2021 - 2368 호

도로 지정 변경 공고

건축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신고 시 그 위치를 지정한 도로의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13일

남 원 시 장

○ 도로지정(변경) 공고내역

지정 번호	대 지 위 치	건축주 성 명	허가(협의) 및 신고번호	도로 길이 (m)	도로 너비 (m)	도로 면적 (㎡)	변경사항		
							변경전	변경후	비고
2020-2 8	남원시 고죽동 602-22	박*길	2020-건축과- 신축신고-248	11.5	6	69	고죽동 602-20 (117㎡)	고죽동 602-21 (69㎡)	진입로 변경으로 인한 도로지정변경